

-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연습실 -

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3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 : 총무과

1. 제안이유

강남 구민회관(삼성로 154)에 입주한 강남문화재단의 사무실 및 연습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연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,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

2. 동의내용 :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연습실 무상사용 기간 연장 동의

가. 신청인 : 강남문화재단

나. 사용면적 : 전용면적 380 m^2 (공용면적 포함 1,177.7 m^2)

다. 사용기간 : 2023.12. 1. ~ 2026.11.30. (3년)

라. 사용목적 : 강남교향악단·강남합창단의 사무실 및 연습실 사용

마. 사용료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'면제'

사용기관	위치	사용면적	허가기간	기존 허가기간
강남 문화재단	삼성로 154 지하1층, 지상2층	전용면적 380 m^2 (공용면적 포함 1,177.7 m^2)	2023.12. 1. ~ 2026.11.30. (3년)	2020. 12. 1. ~ 2023. 11. 30.(3년)

3. 참고사항

□ 사용허가 기간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

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】

-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

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】

-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

□ 사용료(대부료) 감면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

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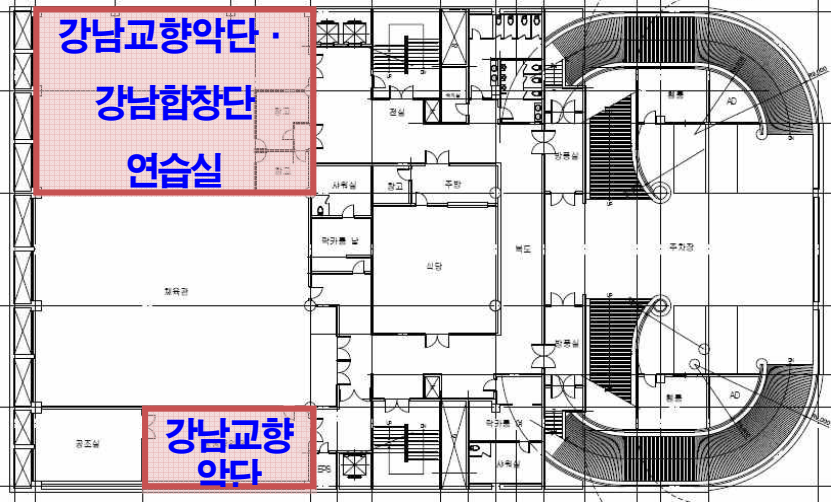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 】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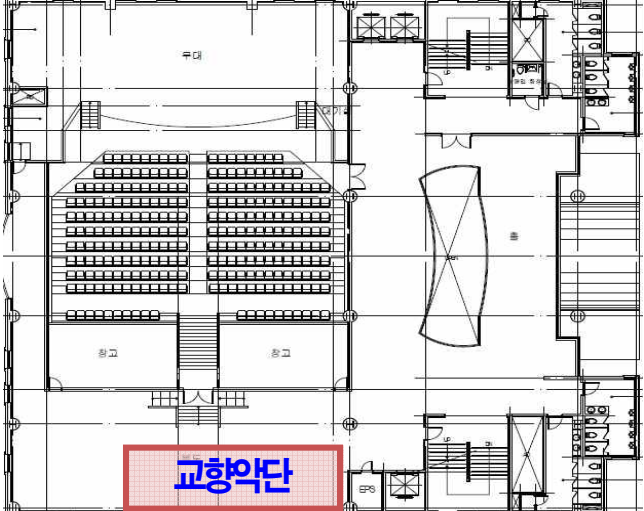
□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간 현황

○ 지하1층

배치도	
용도	강남교향악단.강남합창단 연습실
면적	전용 266m ²

강남교향악단 휴게실 및 창고 등
전용 66.5m ²

○ 지상2층

배치도	
용도	강남교향악단 사무국 사무실
면적	전용 47.5m ²